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안 제3조)
- 건전한 지역개발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안 제4조)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 등(안 제6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2장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

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3장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⑤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범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